火災保險料 輕減을 爲한 防火設計

本文은 보험을 들고자 하는 피보험자를 위한 것으로서 방화설계를 통하여 최소경비(보험료)로 가장 효율적인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안내서이다.

정 양 헌
〈本協會・點檢1部 代理〉

서 론

기업경영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과 영업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위험관리에 주어진 역할은 대단히 크다. 이 위험관리측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경우에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규정된 방화대책을 확실히 실시함과 아울러 최소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대책수립의 하나로서 화재보험에서는 건축법, 소방법과는 별도로 건물의 구조나 소화설비에 관한 방화상의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요율에 差를 두었다. 즉,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단계에서 화재보험요율을 충분히 고려했을 경우 방화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손해경비의 절감은 물론 화재보험료 부담의 경감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보험료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의 개요를 서술하였다.

1. 화재보험요율

—화재보험요율은 화재위험의 "바로메타"—

화재보험요율은 화재위험이 큰 건물에는 높고 화재위험이 적은 건물에는 낮도록 건물의 화재위험도에 따라 산출되고 있다. 즉, 요율은 건물의 화재위험도를 나타내는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를 할 경우에 요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보험료부담면에서도 방화적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것이다.

화재보험요율의 구성

보험요율은 하나의 건물 또는 一團의 옥외설비에 따라서 정해진 기본요율에 각종의 할인, 할증을 부과해서 산출된다.

(기본요율)+(각종할인, 할증)
=(화재보험요율)

・기본요율

기본요율은 건물 또는 옥외설비의 구조와 용도, 작업의 종류 및 사용되고 있는 위험품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할인, 할증

기본요율 . 건물의 구조와 작업내용 이외에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소화설비나 방화문의 설치상태, 위험품의 저장이나 취급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 할증이 적용되어 수정된다.

- 소화설비할인
- 방화문할인
- 공지거리할인
- 작업할증
- 직업할증
- 위험품할증 등

2. 화재보험요율의 경감대책

방화설계는 우선 관계법을 만족시키고, 다음으로 자체적인 방화면의 강화를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자체적인 방화설계의 단계에서 화재보험상의 규정을 감안해서 보험료부담경비의 경감을 시도함이 효과적이다.

다음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경우 화재보험료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1) 건물구조의 優級化

건물구조는 용도나 작업내용과 함께 보험요율 산출에 기본적인 요소이다.

화재보험요율규정에는 방화성능에 따라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참조)

건물설계시에는 건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법적 규제를 만족시키고 건물안에서 행하고 있는 작업의 내용, 취급물품의 종류나 量에 의해 화재위험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으로 화재시 인접건물로의 연소도 고려해서 건물이 지녀야 할 내화성능이나 공법이 결정된다.

이 경우 화재보험요율규정의 구조급별은 화재보험료경감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2급구조의 건물을 보면 2급구조의 기본요율과 1급구조의 기본요율과는 큰 차이가 있다. 건물을 1급구조로 했을 경우 보험료 부담액은 2급구조보다 60% 경감된다.

이와같이 2급구조로 설계하는가, 1급구조로 설계하는가는 보험요율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설경비와 해마다 경감되는 화재보험료 및 방화성능향상과를 비교 검토해서 어느 구조로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건물급별 일반적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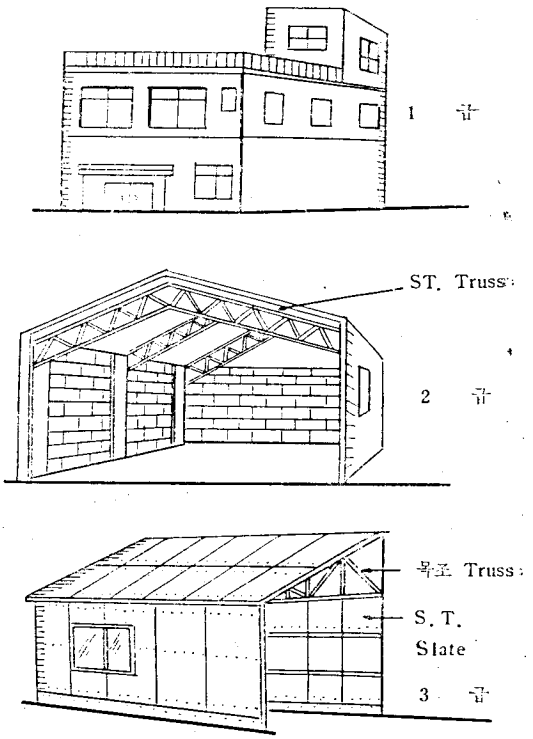

〈철골耐火被覆에 의한 구조의 優級化〉

특히 최근 건물에는 외벽두께를 10cm이상으로 한 ALC판(경량기포콘크리트판) 또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판으로 해서 외벽을 裸鐵骨로 지지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화재보험규정의 건물구조는 3급구조로 되지만 철골부재를 耐火被覆(몰탈, 퍼얼라이트, 석면뿜칠, 또는 프리캐스트판등의 내화력을 지닌 불연재료로 피복)했을 경우는 2급구조로 격상되는 것이다. 즉, 설계시점에서 얼마간의 경비를 들일 경우 앞으로의 보험료가 크게 경감되는 것이다.

—건물구조급수가 격상되는 일반적인 예를 들면

(예 1)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창틀이 목조일 경우—
→2급

◦철근콘크리트건물로서 창틀이 철조일 경우 1급~으로 격상

(예 2)

◦조적조건물로서 지붕틀이 목조일 경우→3급

◦조적조건물로서 지붕틀이 철조일 경우→2급~으로 격상

(예 3)

◦철근콘크리트조건물에 일부 목조지붕틀이 있을 경우→3급

◦위의 건물에 목조지붕틀 부분을 없앴을 경우→1급~으로 격상

(예 4)

◦철골조건물에서 철골에 내화피복이 없을 경우→3급

◦위의 건물에서 철골에 내화피복이 있을 경우→2급~으로 격상

(2) 위험의 분리

—위험한 작업은 별동(別棟) 건물에서—

화재보험요율은 건물별로 산출된다.

하나의 건물안에서 2종류 이상의 작업이 행해질 경우 이 작업중에서 가장 위험이 큰 작업요율 즉 가장 높은 요율이 건물 전체에 적용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요율을 낮추려며는 작업마다 건물을 독립시키면가 이것이 불가능하면 가장 위험이 큰 작업을 다른 작업과 건물을 別個棟으로 사용하므로서 분리시키면 가능한 것이다.

—작업장을 방화적으로 구획할 것—

작업공정상의 문제나 부지의 경제적인 활용면에서의 제약때문에 작업장을 독립시킬 수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안에서 각종 작업이 이루워지지만 각 작업장 중 최소한도 가장 위험이 많은 작업장을 다른 작업장과 방화적으로 구획함은 방화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경감면에서도 유효한 것이다.

작업장을 방화적으로 구획하는 방법과 보험료 경감대책면에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방화벽

화재보험규정에 정해진 방화벽구조나 바닥으로 구획한다. (그림 참조)

• 보험료 경감대책

방화구획을 할 경우 각 구획마다 별개의 건물로 간주하여 구획별 작업내용에 따른 요율이 적용된다.

—위험물저장은 別棟건물에서—

공장건물내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할 경우는 건물내의 작업으로 인한 화재위험과는 달리 저장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다.

화재보험규정에도 위험물저장으로 인한 할증(위험품할증)을 부과하는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경감을 위해서는 위험물창고는 필히 전용별동건물로 해서 공장건물 안에서는 소량(필요한 최소량, 즉 1일사용분 정도)만을 취급하는 장소정도를 설치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쉽지가 않을 경우는 공장건물내의 위험물창고는 방화적으로 구획을 해서 위험을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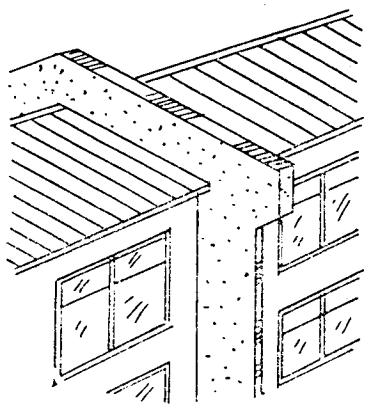

방 화 벽

(3) 연소위험방지

—방화문을 설치할 것—

건물상호간의 연소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구조 자체를 방화적으로 해야 하고 건물을 서로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건물의벽개구부의 방화조치도 중요한 요소이다. 철근콘크리트조건

위험구획 및 별동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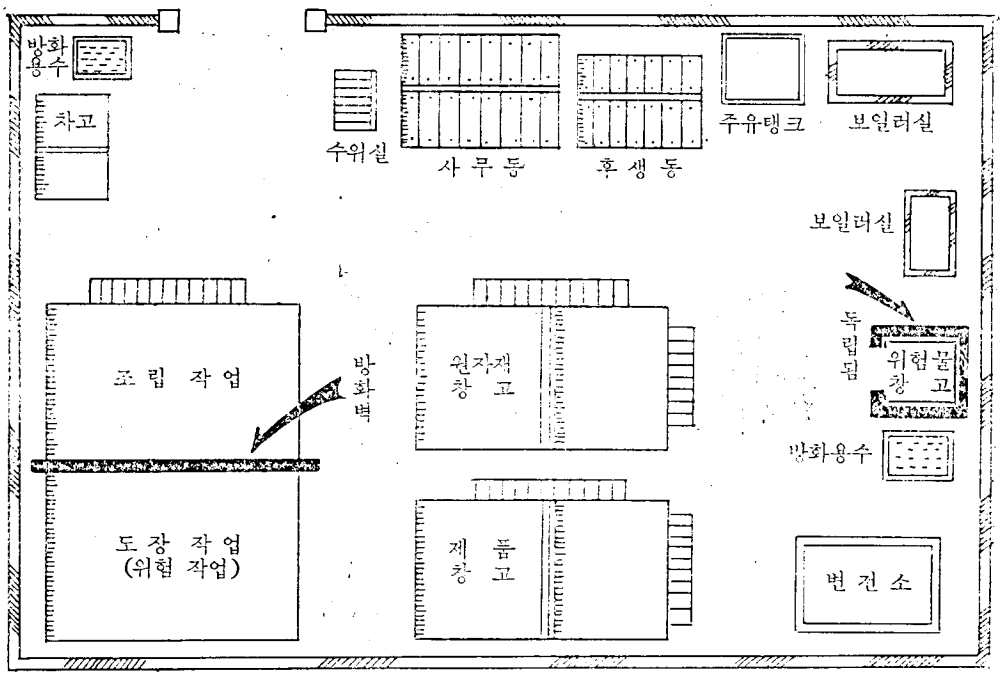

물에서는 연소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창문이 유리이고 출입문이 방화문이 아닐 경우는 아무리 구조자체가 좋다 해도 목조건물과 별차이 없이 방화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화재보험규정에는 이 점을 고려해서 4급을 제외하고는 전건물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는 연소방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화재보험요율할인(방화문할인 : 1급, 2급—10%, 3급—5%)이 적용되고 있다.

◦3급구조이상의 건물에서 외벽의 모든 개구부(통날지붕의 채광부포함)에 소정의 방화문을 설비할 것.

—목조건물로부터의 연소방지—

최근에는 대규모의 목조건물(3급, 4급건물구조)은 법적규제도 있어서 건축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목조건물에 근접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는 연소위험을 고려해서 화재보험요율의 건물간 이격거리에 의한 수정(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소화설비 확인

—소화설비할인규정에 의한 소화설비설치—

소화설비설치와 관리기준에는 소방법과는 별도로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한 규정(소화설비규정)이 있다. 건물에 설치되는 소화설비가 이 규정에 적합하면 설비종류에 따라 보험요율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다.

할인규정과 소방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비교하면 할인규정이 약간 엄격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① 소방법은 소방용설비설치에 관한 최저기준이다.

② 소방법은 건물용도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의무가 되어 있지만 할인규정은 어떤 규모의 건물에도 적당한

권장기준인 것이다.

③ 할인규정은 공설소방력에 의존치 않고 해당소화설비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④ 할인규정은 이 규정에 맞는 소화설비가 설치된 건물에 있어서 화재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요율을 할인하는 것이다.

소화설비설치에 있어서는 소방관계법규를 단순히 만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설비강화로 인한 경비증가와 소화설비할인으로 인한 보험요율의 경감 및 안전성의 향상면을 비교해서 할인규정에 의한 소화설비설치를 검토하면 된다.

이상으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수를 할 경우 화재보험료의 경감대책에 대해서 개요만을 서술하였다.

(본 할인제도의 상세는 대한손해보험협회발행 "화재보험요율서"와 "소화설비규정"을 참조)

또한 건축중 방화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방화관계자료를 첨부 방화관련기술상담을 요청할 경우 필요경비없이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고 있음. *

〈海外新製品〉

가스로 불끄는 「가스消火器」

○…가스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消火器가 국내에 수입시판되고 있다.

이 소화기는 내용물이 가스이기 때문에 분말·액체소화기와는 달리 불을 끈뒤에도 찌꺼기나 잔재가 남지않는것이 특징 따라서 화재가 났던 물건을 재사용할 경우 분해·청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美國에서는 항공사나 정밀기계공장등에서 화재진압용으로 널리 사용되고있다.

내용물은 바꿔줄 필요가 없어 영구적이고 또한 번 사용한뒤 가스가 남아있으면 그대로 재사용도 가능하다. 안전화학이 수입, 작년 말부터 시판중 가격은 시중의 분말·액체소화기보다는 비싸 2.5파운드짜리가 3만9천6백원. 5파운드짜리는 5만9천원이다.